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56
----------	-----

2018년 12월 17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8년 10월 12일, 김 경 의원

2. 회부일자 : 2018년 10월 29일

3. 상정일자

○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0차 교육위원회

(2018년 12월 17일 상정,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 경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각급 기관에서 각급 학교로 시행하는 공문서를 효율적으로 감축하여 업무 신속성과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학교 교직원의 행정업무 경감과 학생 교육활동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 공문서 감축을 위한 교육감, 각급 기관장 등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나. 학교 공문서 감축에 대한 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다. 공문게시판 활용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라. 학교 현장의 의견수렴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마. 학교 공문서 감축 성과분석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18년 10월 12일 김 경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156호로 발의되어 2018년 10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각급 학교로 시행되는 공문서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직원의 행정업무 경감을 통한 학생 교육활동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학교 공문서 감축 현황과 조례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 오늘날 행정이 복잡·다기화되고 전문영역의 확대되면서 공공행정에서는 많은 공문서가 생산되고 유통되어 왔으며, 일선학교에서는 많은 공문 처리로 인해 교육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 이로 인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을 위한 교원 업무 정상화 추진 계획’(학교혁신과-18170, 2011.12.6.)을 수립하여 외부기관의 홍보성 공문서 본청 필터링 게시 방안을 마련해 공문서 감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림1] 공문서감축 정책에 따른 공문서 증감 추이



또한 불편한 공문서 신고제를 운영하고 일반공지, 진학, 연수, 급여 등 단순 안내 사항을 별도의 문서 접수절차 없이 게시·열람토록 하는 공문게시판을 운영하는 등 일선학교로 발송되는 공문서 줄이기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2018년 공문 게시판 영역별 게시기준」은 [붙임1] 참고).

○ 그 결과 각급 학교에서 직접 접수하여 처리하는 공문서가 [표1]와 [표2]과 같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1] 학교 공문서 접수 현황(내부+외부공문)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학교 접수대상 공문 수 (공문+게시)	학교접수 공문 수	게시	학교 접수대상 공문 수 (공문+게시)	학교접수 공문 수	감축 건수 (게시)	학교 접수대상 공문 수 (공문+게시)	학교접수 공문 수	감축 건수 (게시)	학교 접수대상 공문 수 (공문+게시)	학교접수 공문 수	감축 건수 (게시)
11,453,935	9,897,663	1,556,272 (△13.6%)	17,525,834	8,572,793	8,953,041 (△51.1%)	17,881,109	7,772,345	10,108,764 (△56.5%)	18,409,345	7,292,972	11,116,373 (△60.4%)

※ 학교 접수대상 공문 수(공문+게시): 학교접수 공문 수 + 공문서 감축 수(공문게시판)

※ 학교 접수 공문 수: 학교에서 실제 접수 처리 한 공문 수

※ 감축 건수: 학교별 공문게시판 게시 공문 수를 모두 합한 수(2017년: 1,307교)

[표2] 학교 공문서 접수 현황(외부공문)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 외부 공문	1,148,550	1,667,565	1,879,623	1,929,955	2,244,894	2,373,256	2,313,235
본청 접수 후 학교 게시 (공문게시판)	-	-	-	-	551,588	1,248,524	1,361,543
					25%	53%	59%
학교에서 접수 처리 한 공문	1,148,550	1,667,565	1,879,623	1,929,955	1,693,306	1,124,732	951,692

○ 동 조례안은 이러한 공문서 감축노력이 단순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교육행정의 효율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입법적 조치로 사료됩니다.

[붙임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기, 광주, 충남, 전북 등 타 시도에서는 공문서의 감축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조례 제정에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조례안의 구성과 주요 조문별 검토

○ 동 조례안은 목적, 정의, 책무(안 제1조~제3조)의 총칙적 규정과 안 제4조 학교 공문서 감축 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5조 공문게시판 활용, 안 제6조 의견수렴과 안 제7조 평가 등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안 제5조 공문게시판 활용에서는 홍보성이나 단순 안내 사항 등의 학교 공문서의 경우 별도의 문서 접수절차 없이 공문게시판을 통해 게시·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율적 정보 접근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공문서 감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교육감이 학교 공문서 감축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문서의 질을 개선하고 안 제7조에서 공문서 감축 성과를

평가해 조직평가에 반영하도록 한 것은 꼭 필요한 공문서만 유통되도록 함으로써 행정 간소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기타 조문간의 구성 체계와 내용면에 있어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서울특별시교육청도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 -11273, 2018.11.12.).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급 학교로 시행하는 공문서를 효율적으로 감축하여 업무 신속성과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학교 교직원의 행정업무 경감과 학생 교육활동 내실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공문서(이하 “공문서” 라 한다)”란 각급 학교로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를 말한다.
2. “각급 기관”이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 소속 본청의 각 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를 말한다.
3. “유관기관”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교육감은 학교 공문서 감축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유관기관의 장은 교육감의 학교 공문서 감축 요청에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를 제외한 각급 기관의 장은 부서장을 공문서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공문서책임관은 학교 공문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최종 검토하여야 한다.

1. 생산의 필요성
2. 내용의 중복성
3. 분량의 적정성

4. 수신처의 적절성

5. 그 밖에 학교 공문서 감축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 공문서 감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실적 및 성과분석

2. 추진계획 및 세부추진 방안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문게시판 활용) ① 각급 기관의 장은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이 적은 단순 안내, 공지, 홍보사항 등의 학교 공문서는 공문게시판에 게시하여 학교 교직원이 별도의 공문 접수절차 없이 열람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문서 처리단계를 축소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수렴) 교육감은 학교 공문서 감축을 위하여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 교육감은 학교 공문서 감축 성과를 매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조직 성과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